##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 처년 지원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- 제2조(기본이념)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책임을 강화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-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  - 1. "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"이란 고령,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,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  - 2. "돌봄이 필요한 자"란 노령, 질병, 장애, 연소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이며, "돌봄을 제공하는 자"란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한다.
- 제4조(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수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  -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, 간병 및 돌봄지원, 교육지원,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3. 12. 28〉
  - ③ 광명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,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- 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

##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

-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- 1.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한 가족돌봄 청소년 ·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2. 가족돌봄 청소년 ·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
- 3. 가족돌봄 청소년 · 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
- 4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·조사 사업
- 5. 가족돌봄 청소년・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
- 6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- 제7조(지원대상 및 방법) ①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. 〈개정 2023, 12, 28〉
  - 1. 지원기준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· 청년
  - 2.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.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그러하지 않는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  - 1. 간병(요양)서비스
  - 2. 심리치료 서비스
  - 3. 학업지속 및 취업, 자기계발 서비스
- 제8조(업무 등의 위탁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·청 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

를 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3, 12, 28>

- 제9조(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체계 구축)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 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  - 1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·기관 지원사업
  - 2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· 청년을 위한 민간후원 등의 연계사업
  -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
[제목개정 2023. 12. 28]

- 제10조(홍보 및 교육) 시장은 광명시민, 관계기관,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12. 28〉
- 제11조(중복지원의 제한)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 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28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. 12. 28 조례 제305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